



‘온라인화, 글로벌 시대의 제품안전정책’ 토론의 장 열리다

국표원 · 제품안전협회, 정부 · 학계 · 기업 · 소비자단체 · 협회 등 제품안전전문가
150여명 참석한 「2015 제품안전정책포럼」 개최



글로벌 시대의 제품안전 정책을 논하다

국가기술표준원 제대식 원장, 개회사 통해
온라인화, 글로벌화에 걸맞는 제품안전정책 필요성 강조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서울 독산동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온라인화, 글로벌 시대의 제품안전정책'을 주제로 '2015 제품안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국표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정부, 학계, 기업, 소비자 단체 및 협회 등의 제품안전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품안전정책포럼은 제품안전정책 개발을 위한 국민 참여와 토론의 장으로, 작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포럼에서는 온라인화, 글로벌화 되고 있는 제품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제품안전정책 수립에 관해 집중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포럼 첫날인 16일(목)에는 기업, 협회, 유관단체 관계자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담당관, 시험인증평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품안전협회의 품목별협의회 중심으로 안전기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LED조명 등 12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둘째 날인 17일(금)에는 포럼 총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의 제품안전작업반 의장인 문은숙 박사가 '제품안전 글로벌 커뮤니티 변화와 이슈'에 대해 특강했다. 또 한·중 제품안전협력을 위해 '중국의 제품안전정책과 제도 및 양국의 제품안전협력 방안'을 주제로 중국 품질인증센터 한국지사(CCIC KOREA)의 위 콰이 귀(Yu Kai Guo) 지사장이 초청강연을 펼쳤고, 캐나다 산탈라사(Shantalla Inc)의 존 키오그(John G. Keogh) 대표가 '제품안전 결함보상(리콜) 국제동향 및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후 세션에서는 제품안전생태계의 모델 및 해외사례 제품안전 관련법 상의 판매자 지위 및 처벌대상 제품안전 관련 법적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졌다. 특히 제품안전 관련 법적제재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과징금 제도, 이행강제금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안 등이 논의돼 큰 관심을 끌었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17일 개회식에 참석해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안전기준 개선안과 제품안전을 위한 정책제언의 소중한 내용들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계획”이라며 “제품안전정책포럼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제품안전생태계의 플랫폼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불량제품 근절 위해 경제적 제재수단 강화해야”

김기표 부산대 교수, '제품안전정책포럼'서 강조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안

LED조명 등 전기용품 안전확보 위한 대안으로 고려해야

고질적인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생산·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강화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경제적 제재수단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김기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독산동 노보텔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2015 제품안전정책포럼 중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제품안전 관련 법률의 제재수단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리콜명령이나 처벌 외에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물론 이들 제도를 모두 도입하지는 것은 아니며, 이 중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정책당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뜻한다.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적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 중 하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까지 추가해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인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의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리는 게 특징이다. 김 교수가 이처럼 불법·불량제품의 근절대책으로 경제적 개념의 처벌수단 도입을 주장한 것은 현행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제재수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현행 제품안전관리 제도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이나 과태료만 부과해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제품 간의 특성과 차이점 등을 고려한 제재수단의 현실화와 다양화가 어렵다”면서 “또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근거도 미비하고, 벌칙 부과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LED조명 등 전기용품의 경우 미비한 사후관리와 함께 적은 벌금형 위주의 가벼운 형사처벌 문제 때문에 시중에 불법·불량 제품 유통이 확산되면서 산업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때문에 LED조명업계에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을 촉구해왔다. 김 교수는 “불법·불량제품을 유통했는데 벌금은 몇 백만원 정도에 그치고, 이득은 몇 억원씩 얻으면 과연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면서 “다양한 제품의 위반사례를 근절하고, 법적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단속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재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장호익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도 “현재 안전인증 위반 시 벌금형, 과태료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경제적 이득에 비해 벌칙수준이 미비해 불법 수익을 회수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상별로, 신체·재산상의 위해성별로,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불법·불량제품 판매, 유통업자는 처벌을 강화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자기들은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위반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며, 경제적 이행수단을 강화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혜선 건국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발전한 제도지만 고의, 악의여부 등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우리나라에 당장 도입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과징금 도입이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이라 생각하며, 판례도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과태료, 벌금형 등과 같이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5)